

군포도시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군포도시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공모직위	사 장	비상임이사	비 고
인원	1명	6명	

2. 임명기간 :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장가능)

3. 주요 직무내용

- 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소규모체육시설, 송정복합체육센터 관리·운영
- 나. 초막골캠핑장 관리·운영
- 다.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리·운영
- 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관리·운영
- 마. 환경관리소 및 재활용타운 관리·운영
- 바. 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 사. 정비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군포도시공사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장	비 상 임 이 사
1. 사장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건축, 토목, 개발사업 등 관련 전문가 2. 회계, 경영, 세무, 법률, 행정 등의 전문가

「군포도시공사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3)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4)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5)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2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직무수행 요건(요구능력 수준)

-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 다.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라.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
- 마. 군포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 능력 및 추진력

6.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12.(수) ~ 8. 27.(목) 09:00~18:00까지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13) 제외

※ 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ys52@gunpouc.or.kr)

다. 접 수 처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304, 4층]

※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시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사 장	비 상 임 이 사
○ 지원서 1부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학력증명서(학위증) 1부
○ 최종학교학력증명서(학위증) 1부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신원진술서 2부,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기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진은 원판사진 부착(스캔사진 불가),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7. 모집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사 장	비 상 임 이 사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대상자 개별통보)	
2차 시험 (면접시험)	◦ 자기소개 및 공사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 발표 ◦ 전문성·리더십·경영혁신·조직관리 능력, 윤리관 등 개별 면접을 통해 적격자 선발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면접시험 생략 가능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지(추천 후보자 인사검증을 거쳐 선임)	

8. 보 수

- 가. 사장: 「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에 따라 연봉 계약
 나. 비상임이사: 무보수(회의참석수당 지급)

9. 기타사항

- 가. 부정합격 및 경력·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임을 알려드리며 취업심사 대상자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되는 응모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여 향후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 지원자 접수결과 2배수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규정과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사. 군포도시공사 현황이나 참고자료는 [붙임 1]과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경영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자(☎ 031-390-7641)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붙임 1】

군포도시공사 현황

설립 기관	군포시	기관성격	지방공사
설립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일자	2019. 11. 1.
설립 목적	군포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위탁관리 및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경영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공사 업무	-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소규모체육시설, 송정복합체육센터 관리·운영 - 초막골캠핑장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리·운영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관리·운영 - 환경관리소 및 새활용타운 관리·운영 - 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 정비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조직·인원 예산 현황 (2026년 기준)	- 조 직 : 2본부 1실 7부 21팀 - 정 원 : 292명 - 자본금 : 51,570,000천원 2026년 예산 : 99,495,211천원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2배수 추천 → 군포시장 임명(임기 : 3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법령·정관상 자격 요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군포도시공사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군포도시공사 임원 인사규정」 제5조(임명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기 타			